

근로소득세 및 근로계약

(노동법 2021 년 개정안 하에서)

서우회계법인베트남 조성통회계사

Mobile: 098-548-7377

Email: csrgs@seouvietnam.com

2020 년 9 월 현재

금번에는 근로대가별 근로소득세의 과세방식과 근로계약서의 종류, 고용관련 보험료 및 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울러, 2021 년 1 월부터 개정된 노동법이 시행되오며, 이에 영향을 받는 세제사항에 대해 재고해 보겠습니다.

고용관계에서 근로자가 고용주와의 사이에서 수령할 수 있는 근로제공의 대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**근로제공의 대가형태별 근로소득세 과세**

구분	근로소득세 영향	부연설명
급여 및 수당(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여 성격의 수당)	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한 근로소득세율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.	소액 비과세소득 존재함. 현물보조를 통한 직원복리후생비도 과세소득이 됨.
시간외근무수당 및 특정조건 충족시 수당(성과급, 비간헐적 사유로 인한 수당 등)	근무기간에 따라 상이한 근로소득세율 적용되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.	시간외근무수당: 시간외근무시간에 지급되는 시간당 급여를 초과하는 초과할증금에 대해서 비과세
퇴직금	비과세	평균월급여* 50%*근속연수. 단, 고용보험 가입자는 해당사항없음
퇴직위로금(현행 노동법 44 조 근거)	비과세	상호합의하에 근속년수당 1 개월 급여로 하되, 최소 2 개월 이상의 평균월급여 지급.

• 근로계약의 종류 및 유의사항

근로계약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종류	Duration (계약기간)		PIT obligation (근로소득세의무 설명)	SHUI obligation (사회보험료 설명)	2021년 개정노동 법
1. 수습계약	60 일이하의 단기계약에만 해당함.		2 백만동 이상은 급여총액에 10%단일세율, 미만은 근로소득세 면제. 또한, 근로자가 받는 년 과세표준이(급여에서 인적공제 제외금액) 없음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급여확약서를 수령하고 실제로 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, 별도로 근로소득세 면제할 것임.	수습계약기간만을 위한 계약서만 존재시는 면제. 수습 및 정직원채용조건 계약서 통합시에는 납부함.	서울은 동일하나, 수습시간은 관리자의 경우 180 일로 증가.
2.임시 계약으로서 도제훈련계약 및 인턴십 계약 포함)	3 개월미만)	시급자	2 백만동 이상은 급여총액에 10%단일세율, 미만은 근로소득세 면제. 또한, 근로자가 받는 년 과세표준이(급여에서 인적공제 제외금액) 없음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근로자의 급여확약서를 수령하고 실제로 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, 별도로 근로소득세 면제할 것임.	납부함.	서울은 동일하나, 유한기간 계약으로 통합됨. 임시계약 및 도제훈련 계약도 90 일 이내로 한정됨.
		전임근무			
3. 유한기간계약	12 개월에서 36 개월 계약	시급자	9%-35%누진세율	납부함.	
		전임근무			
4.indefinite term 무한계약	연속 2 회 체결시부터 무한계약으로 전환		9%-35%누진세율	납부함	

• **사회, 건강 및 실업보험(SHUI)**

사회 보험(Social insurance, "SI") 및 실업 보험(Unemployment insurance,"UI") 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개인 및 2018 년 12 월부터는 Decree 143/2018/ND-CP 에 의거 social insurance 에 대해서도 work permit 을 가지고, 1 년이상 로컬소재 법인/PMO 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이 납부해야 합니다.

본사로부터 베트남회사/PMO 에 파견온 한국인 근로자는 하기 면제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람.

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면제조건:

단, 1 년이상 본사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고 노동계약이 본사와 체결된 주재원 및 파견근로자는 SI 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.

SI/HI/UI 기여금 납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✓ 베트남근로자(2017 년 6 월이후)

	SI	HI	UI	Total
근로자	8%	1.5%	1%	10.5%
고용인	17.5%	3%	1%	21.5%

✓ 외국인근로자(2018년 12월 이후)

	SI	HI	UI	Total
근로자	8%(2022 년 1 월 이후)	1.5%	0%	1.5%(2021 년 12 월까지); 9.5%(2022 년 1 월이후)
고용인	3.5%(2018 년 12 월 이후); 17.5%(2022 년 1 월 이후)	3%	0%	6.5%(2018 년 12 월 이후); 20.5%(2022 년 1 월 이후)

SI/HI/UI 의 기부금 책정에 적용되는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로 하되, SI/HI는 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20배(29,800,000)를, UI는 지역별최저임금의 20배를 적용급여의 상한금액으로 합니다(현재 법의 최저임금은 149만 동으로 매년 변경될 수 있음).

법으로 정해진 고용자의 기부금 납부액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로 법인세비용 처리되며,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닙니다. 근로자가 부담하는 SI/HI/UI 기부금은 근로소득세

신고시 근로소득의 비용으로 공제됩니다.

첫월에 한해, 14 일이하 근무시에는 SHUI 면제됩니다.

통상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과세표준으로 기부금은 책정됩니다.

고용계약서의 종류에 따라, SHUI 의 면제대상이 달리 적용됩니다.

- **노조지원금**

노조지원금: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회보험 기부금 책정대상 급여의 2%.

법인세법상 노조지원금은 비용인정됩니다.

사용대상: 상위노동조합에게 납부한 경우, 상위노동조합은 해당근로자들에게 65%를 사용함.

- **2021년 1월 시행되는 노동법의 회계 및 세무영향**

- ✓ 시간외근무수당 손금불산입 한도액 감소하나 여전히 존재함. 증가한 일인 근로자당 년 300 시간을 한도로 시간외근무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✓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변동으로 인해 관할 DOLISA 에 갱신사유 발생함
- ✓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은행계좌이체 실행시 관련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함.
- ✓ 사용자는 임금지급시에 매번 반드시 근로자에게 임금, 시간외근무수당, 급여공제내역을 명기한 급여명세서를 발행해야 한다.
- ✓ 노동법의 대상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, 도제훈련계약 및 인턴십 계약 및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자를 대상으로 확대해석 되었습니다. 이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및 SHUI 보험료 납부대상도 확대해석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입니다.
- ✓ 복수노동조합의 가능해 지므로, 노조지원금을 지급할 대상도 복수도 확대될 지를 향후 추가입법내용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.